

##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안전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 10. 23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의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.

**제2조(구성)**

- ① 위원회는 연구부학과장과 연구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.
- ② 임명직위원은 기초치의학 전공교수 2인과 임상치의학 전공교수 2인이 포함 되어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부학과장이 되며, 필요시 학생부학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**제3조(임기)**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을 심의한다.

- ① 교육 및 연구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기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
- ② 강의실, 실험실습실 및 공동기기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
- ③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일상점검 이상 유무보고에 따른 조치사항
- ④ 기타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사항

**제5조(회의)**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(2024. 10. 23)로부터 시행한다.